



충전소의 자율검사업무 추진계획

한국LPG가스공업협회

□ 현황

○ 관련법규

-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 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, 동법시행규칙 별표14
-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 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36

○ 충전소 검사 개요

- LPG충전사업자는 년 1회 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고, 자율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
- 충전시설의 자체검사는 지난 99년 2월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바 있으며, 현재는 사업자의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정하여 시행되고 있음
-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할 경우
 - 검사시기: 완성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매6월이 되는 날의 전후 15일 이내

· 보유할 검사장비

완화 전('03.12.29 이전)		완화 후('03.12.29 이후)	
검사장비	가격(원)	검사장비	가격
○기밀시험설비	약 4백만~5백만원	○기밀시험설비	약 1백만~1백50만원
○가스누출검지기		○가스누출검지기	
○안전밸브작동시험기		○온도계	*이중 가스누출검지기와 압력계는
○온도계		○압력계	충전소에서 기 보유하고 있으므로
○압력계		○절연저항측정기	실제구입비용은 70~100만원
○절연저항측정기			정도면 가능할 것임
○살수압력측정기			
○초음파두께측정기			
○그밖의 검사장비			

· 대행 의뢰건수 (단위:개소)

구분	의뢰건수	전체 총전소수	비율
'03	1,165	1,170	99.5%
'04	1,254	1,262	99.4%

* 자료:가스안전공사

□ 실태 및 문제점

○ 중복검사로 인한 사업자 부담 가중

- 정기검사를 받은후 6개월후에 또다시 자율검사를 실시하므로 중복됨

○ 대행기관의 독점

- 현행 LPG법시행규칙 별표9(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)에는 안전공사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자율검사를 대행케 하고 있으나, 고법시행규칙 별표36에는 LPG충전시설에 대한 공인검사기관의 기술인력 및 검사장비 조항이 없어 안전공사 이외의 다른 기관에는 대행을 의뢰할 수 없는 상황임

○ 사업자들이 자율검사 보유장비 완화내용을 모르고 있음

- 검사장비가 대폭 완화되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종전대로 가스안전공사에 대행을 의뢰하고 있음

○ 자율검사제도 입법취지 퇴색

- 자율검사는 말 그대로 사업자가 자기의 시설을 자율적으로 검사·점검하는 것을 의미하나, 가스안전공사가 거의 모든 충전소의 자율검사를 대행하고 있어 현행 자율검사제도 도입취지가 퇴색됨

□ 자율검사 추진계획(안)

○ 목 적

- 충전사업자가 직접 자율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장기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하고, 자기 시설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바람직한 공급자상 확립

○ 추진계획(안)

- 회원사 검사장비 구입 실시
 - 완화된 자율검사 보유장비 내용을 흥보하여 사업자 스스로 자율검사를 실시하도록 안내
 - 가스안전공사에 대행할 경우 수수료와 부대비용 등을 합쳐 약 20~30 만원정도 소요되며, 충전사업자가 직접 장비를 구입하여 실시할 경우 약 3~5년후에는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음
- 협회(또는 지회)가 자율검사장비 일괄 구매
 - 개별 사업자가 장비를 구입하는 것보다 협회가 회원사의 구매의사를 조사하여 일괄 구입후 회원사에 저렴하게 공급
 - ☞ 개별 구입시보다 10~20%정도 저렴 예상
- 협회(또는 지회)가 자율검사장비 구입 후 회원사에 임대
 - 협회(또는 지회)가 장비를 구입한후 자율검사가 도래한 회원사를 대상으로 장비를 임대해 주는 방안 검토
 - ☞ 현행 안전관리규정에는 사업자가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월 1회 이상 검사장비 관리 및 운영상태를 점검 토록 명시돼 있음
 - ☞ '보유'라는 정의에 대한 유권해석 여부
- ※ LPG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(15)의 규정에 의해 소형저장탱크에 LPG를 공급할 경우 벌크로리를 보유 토록 돼있으나 상당수의 충전소는 용역회사를 통해 임대·사용하고 있음
 - 하반기 시범 실시 추진